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-26호

「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9일

상 주 시 의 회



「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,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지급대상 (안 제3조)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(만85세 이상)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 (6개월 이상)

다. 지급시기 및 지급액, 지급원칙 (안 제4조 ~ 제5조)

- 매월 50,000원 (신청에 의하여)

라.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(안 제7조)

마. 지급중지 및 환수 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lunalena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상주시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